

인천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가단2514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정영주

변론 종결2021. 10. 6.

판결 선고2021. 10. 2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E(F생) 사이에 2020. 2.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E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2. 27. 접수 제946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

이 유

1. 인정 사실

가. G 주식회사는 E(F생)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이 H 유한회사,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이하 'J')로 순차로 양도되었다.

J는 E를 상대로 위 양수금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36277)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19. "E는 J에 12,311,111원 및 그중 3,664,790원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13,84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2012. 8. 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J의 E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J로부터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재차 양수하였고, 2020. 7. 14.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위 승계집행문 등본이 2020. 7. 20. E에게 송달되었다.

나. E의 부친인 망 K(이하 '망인')은 2019. 11. 2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와 자녀인 피고 D 및 L, M, E가 있다. 그들의 법정상속분은 피고 C가 3/11,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 2/11이다.

다.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사망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2020. 2. 27.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이 1/2지분씩 공동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들은 2020. 2. 27.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J의 E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존재하였고, 원고가 위 양수금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E의 무자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가 주식회사 N에 대한 7,172,04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J에 대한 17,879,583원3)의 이 사건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2007년식 자동차(시가 약 4,000,000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8호증,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미추홀구, 인천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Q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주식회사 P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각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E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는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C가 망인의 배우자로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고 맞벌이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고, 피고들이 망인과 함께 거주하며 망인을 부양 및 간호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하는 반면, E는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이 존재하므로, E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거나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무렵인 2012. 12. 13. 피고 C 계좌로 망인이 192,653,690원을, M가 30,000,000원을 각각 입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D가 피고 C 계좌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 C로부터 2011. 6. 30. 16,900,000원을 지급받은 후에 그 원리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일 뿐, 부양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E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기여분, E의 특별수익으로 E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들의 기여분을 각 50%로 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E가 위와 같이 기여분 합의를 하고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뿐, 위와 같은 기여분 합의로써 E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들은, 피고 C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실질적 공동재산 청산 및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 의미로,

피고 D는 망인의 장남으로서 망인의 배우자 및 부모님을 부양하고 앞으로도 부양할 기여도를 인정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이 상속한 것이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항변한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전 양도인인 I 주식회사가 2011. 7. 20. E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1타채27725)을 발령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1. 9. 19. 망인에게 도달한 사실, J가 이 사건 양수금채권에 관하여 받은 지급명령 정본 역시 2012. 7. 25. 망인에게 도달하였고, J의 E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4타채22845)의 결정정본은 2014. 10. 6. 피고 C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E의 가족이고,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을 공유하였으므로, E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10년 가까이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상속분을 공동담보에서 제외시켜 E의 일반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들과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E 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봉지수

별지

- 1) 청구원인 내용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 2) 을 제3호증(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작성일자가 "2020. 2."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 협의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2020. 2. 27. 무렵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작성일자를 2020. 2. 27.로 추정한다.
- 3) $12,311,111\text{원} + 3,664,790\text{원} \times 2,773\text{일}(\text{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 2012. 7. 26. - 2020. 2. 27.) / 365\text{일} \times \text{연 } 20\%$, 원 미만 버림